

의안번호	2221005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6.9.9.
추계번호	26D4443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매년 1회 점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억 9,800만원, 2032년 4억 3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0억 7,100만원(연평균 4억 1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노면표시 성능점검 (안 제4조제3항)	398	406	414	422	431	2,071	414

주: 1. 노면표시 성능점검(안 제4조제3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등이 특별·광역시도(구도 포함, 포장연장 21,947km)에 설치된 노면표시에 대하여 매년 1회 표본 측정 방식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제3항(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·관리기준 등)	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설치·관리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제3항(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·관리기준 등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노면표시 성능점검이 의무화되는 경우, 시장등이 특별·광역시도(구도 포함)에 설치된 노면표시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「교통노면표시 설치·관리 업무편람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매년 노면표시 성능을 점검하고 있으나, 특별·광역시도, 지방도, 시·군도는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특별·광역시도 등의 노면표시 성능점검 실시로 추가 재정소요 예상
 - 다만, 본 추계에서는 차량 통행량,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·광역시도에 한하여 노면표시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특별·광역시도의 연장은 최근 5년(2021~2025년) 동안 21,707km, 22,102km, 22,160km, 21,904km, 22,013km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, 추계기간 동안 2025년 말 연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3%	2.0%	2.0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장등이 특별·광역시도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매년 1회 점검하는 데 필요한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점검 대상 연장(21,947km)에 연도별 km당 점검비를 곱하여 산출
 - 점검 대상은 특별·광역시도(구도 포함)의 포장연장 21,947km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
 - － 국토교통부 「도로현황조서」(2025년 12월 31일 기준)상 연장 22,013km에 포장률 99.7%를 적용한 값임
 - km당 점검비는 2026년 기준 1만 7,420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 적용
 - － 「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등 수수료 고시」(경기도 고시 제2026-12호)의 '노면표시 반사성능측정기' 시험 수수료 174,200원(10km·20개소 기준)을 활용하여 km 당 점검비 추정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시장등이 특별·광역시도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매년 1회 점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억 9,800만원, 2032년 4억 3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0억 7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점검 대상 연장(a, km)	21,947	21,947	21,947	21,947	21,947	—
km당 점검비(b, 원)	18,124	18,486	18,856	19,233	19,618	—
추가재정소요 (=a×b, 백만원)	398	406	414	422	431	2,07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시장등이 특별·광역시도에 설치된 노면표시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